# 아름다운 생복한 시 입

제2021-42호 2021년 3월 5일(금) 시



보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1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1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21-10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1-105호 지적재조사지구 내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에 따른 성과 고시 7

### 공 고 0 여수시 공고 여수 도시만리계획자동치운전학원 결정 변경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제2021-676호 ㅇ 여수시 공고 제2021-68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9 0 여수시 공고 제2021-684호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공고 18 이 여수시 공고 제2021-688호 야시지진파에/물위한도 항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가정안 입법예고 31

# 기 타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1 - 10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주 소	행 자 성 명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2021-04 ('21.3.5.)	2021.3. 5.	여수시 경호동 670-1	위본건설(주) 양회국	2021.3.12.	2021.3.13.	여수시 경호동 60-2	토석류 유출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2021. 3. 5.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1 - 10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sup>6</sup> 주 소	행 자 성 명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2020–89 (2020.11.12.)	2021. 3. 5.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도시미화과)	2021. 1.	2021. 5.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21-19번지 자선	돌산읍 송도 동편항 물양장 정비공사

2021. 3. 5.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1 - 104호

#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 3. 5.

# 여 수 시 장

### ○ 도로명주소(부여 • 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7]	재		

<sup>※</sup>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 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 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회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ΗΖ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돌산읍 평사리 85-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238-30	20210305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돌산읍 서덕리 13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994-33	20210305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며수시 무선중앙로 25(화장동)		20210305	20091013	무선지구의 무선을 도로명으로 반영	건물 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화장동 793-6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25(화장동)	20210305	20091013	무선지구의 무선을 도로명으로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상암동 1353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696(상암동)	20210305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상암마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만산동 713-1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588 (안산동)	20210305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79-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소호관기로 142-7	20210305	2014021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화양면 장수리 685-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만포장수로 420	20210305	20200518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685-8, 685-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장수로 422	20210305	20200518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며수시 묘도2길 27-1 (묘도동)		20210305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며수시 묘도동 1092-2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27-1 (묘도동)	20210305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 지적재조사지구 내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에 따른 성과 고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지구(선원 반월, 화양 옥적), 2020년도 지적재조사지구(율촌 가장, 화양 이천, 소호 항호) 내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에 따른 성과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 여 수 시 장

-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붙임 참조
- 나. 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 다. 좌표 및 표고 : 붙임 참조
- 라. 경도와 위도 : 붙임 참조
- 마. 설치일자,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붙임 참조
- 바. 측량성과 보관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에 따른 성과 고시 내역 1부. 끝.

### 여수시 공고 제2021-676호

### 여수 도시관리계획(자동차운전학원)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자동차운전학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 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3. 5. 여 수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그브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十七		귀시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1	자동차운전학원	만흥동 1441-3번지 일원	16,922	감)16,922	_	역고-50호 96.11.19.	

### ■ 자동차운전학원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폐지(16,922m²)	자동차운전학원 시설 이전 등에 따른 시설 유지 필요성 저하

- 2. 여수 도시관리계획(자동차운전학원)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 3.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 4. 공고기간: 2021. 3. 5.~ 3. 19.(14일간)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문

여수시 공고 제2021-680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별	첨			별	첨
	부동산의 표시						
확인서				별	첨		
발급	취득사유						
신청인				별	첨		
	공고기간						
				별	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대장상							
소유자		별	첨			별	첨
	서대(버이대)					세14위이(드로비송)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등기		별	첨			별	첨
명의인		22	召			3	심

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 여 수 시 장

### 유 의 사 항

-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확인서 별	·급 신	청인			대장신	상 소유자	둥기	l명의인	
연번	23 724	201 A 61 A1		부동산	의 표시		취득	공고기간	23 1-4	2012 (A) (A)	ਮੂ ਜ਼	20114 (01 A)	비고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취 득 사 유	(2개월)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계	21건			22필지									
1	이연심	1947. 7. 9.	돌산읍 신복리	920-5	대	1층 벽돌조 주택 34.4㎡	매매	2021. 3. 5. ~ 2021. 5. 4.	정양귀	1955. 9. 19.	-	-	
2	김숙희	1960. 1. 3.	돌산읍 금성리	832, 826-10	대	1층 블록 주택 39.3㎡ 1층 목조 주택 23.5㎡ 1층 블록 7.6㎡	매매	2021. 3. 5. ~ 2021. 5. 4.	오인효	1912. 1. 27.	-	-	
3	박형자	1956. 11. 10.	돌산읍 군내리	1323-3	대	1층 목조 주택 45.3㎡	증여	2021. 3. 5. ~ 2021. 5. 4.	박만두	1958. 3. 25.	-	-	
4	문기철	1952. 3. 6.	남면 유송리	959		1층 목조 주택 49.6㎡ 1층 돌담 창고 16.5㎡	상속	2021. 3. 5. ~ 2021. 5. 4.	문춘순	1931. 1. 4.	-	-	

			:	확인서 별	)급 신 <sup>2</sup>	청인			대장신	상 소유자	등기	]명의인	
연번	2년 11년	યોગને છો છો		부동산	의 표시		취 득	공고기간	2-J 17-H	શ્રીમને છી હો	ᅿᅲ	มาส 61 61	비고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취 득 사 유	(2개월)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5	강금주	1957. 1. 13.	남면 심장리	107	대	1층 벽돌조 주택 67.07㎡	상속	2021. 3. 5. ~ 2021. 5. 4.	강영두	1929. 3. 9.	-	-	
6	유국상	1957. 9. 9.	남면 안도리	620-3	대	l층 박조 주택 56.1㎡ l층 박조 창고 14.5㎡	증여	2021. 3. 5. ~ 2021. 5. 4.	김중곤	1951. 12. 20.	-	-	
7	김정태	1969. 5. 27.	남면 안도리	1227-1	대	1층 벽돌조 주택 33.8㎡	매매	2021. 3. 5. ~ 2021. 5. 4.	정영수	1951. 6. 14.	-	-	
8	김진석	1968. 2. 18.	남면 유송리	99-2	대	1층 목조 주택 30㎡	매매	2021. 3. 5. ~ 2021. 5. 4.	원용만	1931. 9. 30.	배춘성	1937. 11. 25.	
9	조병기	1951. 3. 5.	남면 두모리	1005	대	1층 벽돌조 주택 69.6㎡ 1층 목조 창고 31.9㎡	상속	2021. 3. 5. ~ 2021. 5. 4.	조영문	1932. 7. 12.	-	_	

			3	확인서 별	발급 신치	청인			대장선	상 소유자	등기	명의인	
연번	2J <del>12J</del>	2012 O O		부동산	의 표시		취득	공고기간	23 <del>114</del>	201 A 61 A1	23 723	20114 (01 A)	비고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취 득 사 유	(2개월)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10	정수자	1954. 3. 20.	화양면 장수리	721	답	1층 블럭 주택 33.48㎡	상속	2021. 3. 5. ~ 2021. 5. 4.	김순돌	1943. 6. 4.	-	-	
11	최원식	1952. 1. 1.	화양면 장수리	963	대	1층세멘 주택 45.45㎡ 1층 블럭 주택 11.9㎡	상속	2021. 3. 5. ~ 2021. 5. 4.	최응수	1928. 3. 20.	-	-	
12	홍영학	1952. 1. 11.	화양면 안포리	214	대	1층 목조 주택 46.8㎡	상속	2021. 3. 5. ~ 2021. 5. 4.	홍병기	1931. 11. 5.	홍봉수	1900.8.8.	
13	김영삼	1959. 6. 7.	화양면 안포리	1528	대	1층 목조 주택 34.4㎡ 1층 블럭 창고 8.1㎡	증여	2021. 3. 5. ~ 2021. 5. 4.	박경오	1920. 6. 21.	-	_	
14	박정돌	1952. 12. 27.	화정면 월호리	76		1층 목조 주택 38.2㎡ 1층 목조 주택 22.4㎡	상속	2021. 3. 5. ~ 2021. 5. 4.	박준규	1922. 6. 15.	-	-	

			į	확인서 별	날급 신기	청인			대장식	상 소유자	등기	l명의인	
연번	N1	ગીમને છી હો	부동산의 표시			취 득 공고기 사 유 (2개월	공고기간	성명	אוויז פו עו	λJ г <del>г</del> l	2014 OLA)	비고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 유	(2개월)	78.8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15	문학도	1947. 2. 8.	화정면 낭도리	817	대	1층 목조 주택 27.4㎡ 1층 벽돌조 주택 9.2㎡	매매	2021. 3. 5. ~ 2021. 5. 4.	정옥심	1902. 8. 8.	-	-	
16	문학도	1947. 2. 8.	화정면 낭도리	817	대	1층 목조 주택 33.8㎡ 1층 목조 창고 20㎡	상속	2021. 3. 5. ~ 2021. 5. 4.	문화일	1920. 9. 29.	-	_	
17	김영예	1938. 11. 12.	화정면 조발리	372	대	1층 목조 주택 49.6㎡ 1층 블럭 창고 13.8㎡	상속	2021. 3. 5. ~ 2021. 5. 4.	이정수	1933. 2. 9.			
18	신충우	1951. 2. 24.	화정면 적금리	408	대	1층 목조 주택 42㎡ 1층 박돌조 주택 29.6㎡	상속	2021. 3. 5. ~ 2021. 5. 4.	신영민	1922. 4. 17.	-	-	

		확인서 발급 신청인							대장상 소유자		둥기명의인		
연번	zJ rri	શ્રીમને છી હો	부동산의 표시			취 득 사 유	공고기간	2-J 17-H	યોગને છો તો	ᆲᆱ	생년월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 유	(2개월)	성명	생년월일	성명	78 단 될 된	
19	임창서	1968. 8. 22.	화정면 개도리	881	대	1층 목조 주택 76.4㎡ 1층 블럭 창고 18.2㎡	증여	2021. 3. 5. ~ 2021. 5. 4.	임옥환	1910. 5. 13.	-	-	
20	김주성	1948. 3. 24.	화정면 개도리	564	대	1층 철골 주택 64.9㎡ 1층 철골 주택 50.4㎡	증여	2021. 3. 5. ~ 2021. 5. 4.	한정자	1925. 2. 20.	-	-	
21	김용범	1976. 1. 11.	화정면 개도리	135	대	1층 벽돌조 주택 68.7㎡ 1층 블럭 축사 19.2㎡	증여	2021. 3. 5. ~ 2021. 5. 4.	김원배	1934. 5. 15.	김원배	1934. 5. 15.	

#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긴	산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시컨이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	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m²)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지적·종합민원·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접 수 사 실 조 사 결 과 통 지 결재

0	의	신	청	의	견		

#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공고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직불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및 단체에서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5.

# 여 수 시 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수산자원보호직불제)
- 신청자격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대상 :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 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②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 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③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및 제23조(보조금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구분	근거법령	기준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수산자원관리법」제36 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일시적 • 자 <del>율</del> 적 조업중단	-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 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자율 휴어기에 어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경우 선정시 가점 부여 가능  * 자율 휴어기는 기간을 연속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선택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 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의무	생분해성 어구 사용	「수산자원관리법」제27 조	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 착할 것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혼 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최소 조업 일수		해당 연5	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 지원금액

- 지 원 율 : 국고 100%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아래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앞 구간의 기 적용 합산 톤수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b>1구간</b>	<b>2구간</b>	<b>3구간</b>
(어선 <del>톤수</del> )	(10톤 이하)	(10~20톤)	(20톤 초과)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 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 원)으로 한정

# ○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어선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비례직불금'을 지급
- 지급시기 : 2021년 12월
- 지급제한
  -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신청년도의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전부 미지급	직불금 지급일 (12월 이후)까지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선구 비시ㅂ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12월 이후)까지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6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퍼센트,	

7	「수산업법」,「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20퍼센트,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환 수 :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 사항 관련 서류 미 보관시 10~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 2. 신청기간 : 2021. 3. 5. ~ 2021. 4. 30.
- 3. 신청장소(방문접수):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청사 3층)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20)

# 4. 구비서류

- 단체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각 1부
- 개인 및 단체 소속 어업인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각 1부.
- 어업면허(허가)증(면허증, 신고증) 사본 1부.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위판실적, 영수증 사본 등)
-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도 가능)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 5.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시행지침 확인
① 사업 준비	(~2월)	지자체	-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
		(시군구, 시도)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사업설명,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지자체	- 직불금 신청 접수(3.5~4월 말)
	-	(시군구, 시도)	, ,
② 신청·접수	(~4월)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3.5~4월 말)
		어업인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
<u></u>			
		지자체	-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시군구, 시도)	- 신청자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5월말)
		(八正 1 , 八工)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국립수과원에 적합성 검토 의뢰(~6월말)
		그리스키이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적합성 검토 및
③ 사업자 선정	(~9월)	국립수과원	검토 결과 해양수산부에 제출(~7월말)
			- 지급대상자 선정(8월)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필요시 전문가
		해양수산부	그룹 사전검토)
			- 지급대상자 통보(9월)
			(해양수산부 → 시·도(어업관리단) → 시·군·구)
<u></u>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지급요건(기본의무,
④ 이행점검	(~10월)	어업관리단	선택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9.10~10.31)
4 4800	(102)	76696	- 점검결과 해양수산부, 시·도에 통보(~10월말)
<u></u>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해양수산부에 지급
		지자체	예산 요청(~11.10)
⑤ 자금배정 및 집행	(~11월)	(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자에게 선정 여부 통보(~11.20) 및
			보조금 지급(12월)
		해양수산부	- 지자체별 예산 교부
<u></u>			
- UOTU	(~익년	해양수산부,	- 수령자 자료 관리
⑥ 사업정산	1월	지자체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07 0	177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대표자명	)				법인명				
신 원	주소(법인소재기	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청 인	전자우편	전자우편						화번호	<u>.</u>	
	입금계좌 (은	은행명)		(예금주	5)	(계좌번호)				
	어업경영	영체 등록여부			류(등록번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 <del>-</del>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	고)번호	어	업의 종류	허가(면허,신.	고) 기간	<u> 포</u> 호	힉물 '	채취물
어업	주 어업									
허가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 (면허,	<u> </u>	어선의 종류			H선번호	어선의 당	병칭	총톤수 마		마력
( <u></u> 신고)										
현황	사용	사용								
	어선									
지급	기본의무				선택	의무				
요건 (준수	총허용 어획량할당	어선 일시적, 감척 조업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부착	해양쓰러 수거		ュ	밖의 의무
의무) [] []				]	[ ]					[ ]
			 전	년도 (	거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	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여수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 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 ] 동의 [ ] 거부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 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 •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웍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2." 신청인" 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 '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 4."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 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 면허 · 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6." 지급요건(준수의무)" 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 7." 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 획량을 적습니다.

[붙임] (3쪽 중 3쪽)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del>-</del>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li>■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 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총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li> <li>■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 보</li> </ul>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ul> <li>■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 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li> <li>■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 보</li> </ul>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참여 단체	대상 어종(기간)	증빙 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고등어, 오징어 등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해당 없음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생분해성 어구 사용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별첨]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이행계획서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의무 미선택한 경우 공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별첨]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참여 단체	수거 계획량(기간)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00톤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별첨]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참여 단체	이행하는 의무	증빙 자료
	그 밖의 의무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종묘 방류, 조업구역 제한, 어구 사용량 제한 등	[별첨] 기타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		참여인	<u> </u> 원 :	명		
단체명									
단체	대표자명								
2	두 소								
대표	사무실			팩:	스				
연락처	e-mail			휴다	┤ <b>폰</b>				
대성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ठे	]양수산-	부장된	가 :	귀하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 0000단체 -

2021. 00. 00(제출일)

[단체명]

#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0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갈치, 오징어 등
근해연승	o o건(o o 명)	경북 ㅇㅇ건, 강원	EM, 484 8
트웨턴 6	002(008)	ㅇㅇ건, 제주 ㅇㅇ건	

#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 1. 필수조건

○ TAC 할당 및 준수 : '21.7월~'22.6월까지 오징어 TAC 할당 및 준수

# 2. 선택조건

		참여 단체	대상 어종(기간)	증빙 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고등어, 오징어 등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해당 없음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수산자원보호 의무	생분해성 어구 사용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별첨]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이행계획서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해당사항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별첨]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없는 경우 공란)		참여 단체	수거 계획량(기간)	증빙 자료
( O 단 )	해양쓰레기 수거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00톤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별첨]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참여 단체	이행하는 의무	증빙 자료
	그 밖의 의무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종묘 방류, 조업구역 제한, 어구 사용량 제한 등	[별첨] 기타 증빙서류

,	I역	신경	신청자 허가 어선			선		
시·도	사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번호	톤수
강원	울진	홍길동	_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0000	25.7

# 공 고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3월 5일

# 여수시장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 이유
  - 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이미 기재되었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거스르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게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타법 개정 사항 반영
    - 1)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 2)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 나. 상위 법령에 이미 기재되었거나 충분히 유추 가능한 사항 삭제
  - 1) 제2~3조
- 다. 상위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삭제
  - 1) 제4~5조, 제7~9조
- 라. 임기 및 해촉(안 제3조) 신설
- 마. 교육 및 훈련(안 제4조) 신설
- 바.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3. 개정조례안: 별첨
- 4. 입법 예고기간: 2021. 3. 5. ~ 3. 25.(20일간)
-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1) 주 소: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 2) 받는사람: 여수시장(재난안전과)
- 3) 전 화: 061-659-4045 팩스: 061-659-5838
- 4) 이 메 일: jmh12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기	정조례	op-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찬성	여부	( ۱ کا ۱ کا ۱	기타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참고사항

### 【별첨 1】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다"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둘 수 있다.

-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 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 3.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토목 등의 기술사
-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여수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교부한다.
- ⑥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⑦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 제3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험도 평가 지원)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6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경비지급)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ᅊ[]는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jo	경단철일 -		;;;;;;;;;;;;;;;;;;;;;;;;;;;;;;;;;;;;;;	
	<del>-</del> .				
	주 소				
신청인					
	소 속		직 위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E-mail)	
	[ ]등록 [ ] 말소				
	TIDHAL				
신청사항	전문분야 ※ 등록 신청하는	·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건축물	[ ] 교량·터널	I	[ ]댐·저수지	
		— 0	!	[ ]펌·시구시	
	[ ] 철도	[ ] 원자력시설		[ ] 항만	
	[ ] 철도 [ ] 가스 · 전력 · 통신	[ ] 원자력시설			
		[ ] 원자력시설		[ ] 항만	
「여수			į	[ ] 항만 )	5항에
	[ ] 가스 · 전력 · 통신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5항에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5항에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b>5항에</b> 일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험도 평가단원 [	관한 조례」 7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일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험도 평가단원 [	관한 조례」 7 ]등록 [ ]말: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따라 위외	[ ] 가스 · 전력 · 통신 시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아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험도 평가단원 [	관한 조례」 7 ]등록 [ ]말: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따라 위외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험도 평가단원 [	관한 조례」 7 ]등록 [ ]말: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따라 위외	[ ] 가스 · 전력 · 통신 시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아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험도 평가단원 [	관한 조례」 7 ]등록 [ ]말: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따라 위외	기가스 · 전력 · 통신 시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아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 원자력시설 [ ] 기타( 구성 및 운영에 범도 평가단원 [ 신 : 귀하	관한 조례」 7 ]등록 [ ]말:	[ ] 항만 ) 제2조제4항 • 제2조제 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 앞쪽)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뒤쪽)

본 증을 분실하였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061-659-49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증 규격) 가로 12cm  $\times$  세로 9cm / (사진 규격) 가로 3.5cm  $\times$  세로 4.5cm

혀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진에 의해</u>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 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 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진·화산재해대</u> <u>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u> <u>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 1. "위험도 평가" 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 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 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 야 전문가로 구성한 지진피해 시설 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
- 3. "위험도 평가단원" 이란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여수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둘수 있다.
-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라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 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여수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

- 3.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토목 등의 기술사
-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 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여수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교부한다.
- ⑥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여수시 대책본부장이정한다.
- ⑦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한다.

제3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인 단원 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제4조(위험도 평가) 여수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여수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 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 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있다. 다만,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여수시 대책본 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삭 제> 등) ①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 는 경우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 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라남도 지역본부장")이 위험 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 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 <삭 제> 격) ①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 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 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여수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은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여수시 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수 있다.
- ④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 3. 여수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 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따 른다.
- ⑤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역본부장이 여수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여수시 제5조(위험도 평가 지원) ①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 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여수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 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 2. 시설물 피해상황
  - 3. 화재 발생 상황
  -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 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 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 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 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업 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 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 제7조(경비지급) 여수시 대책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 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다.
-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3호서 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각각 해 당하는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 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 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 위험
- 2. 사용제한
- 3. 사용가능
-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 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 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 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 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삭 제>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 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여수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일체를 전라남도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 ④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등) ①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 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 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 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

<삭 제>

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여수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 해 보상) ① 여수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 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 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운영 및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운영 등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u> 제6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u> ①
대책본부장은 위
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
<u>고려해야</u>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u>취해야</u>
<u>&lt;삭 제&gt;</u>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제8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ㅣ 사항 외에 ------ 구성 및 ----- 대책본부장이 정한다.